

수탁연구계약서

기술표준원장(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)을 “갑”으로 하고 을(를) “을”로 하여 「기술표준원등의 시험·연구및기술지원규칙」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탁연구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“갑”은 다음의 연구를 “을”의 위탁에 의하여 실시한다.

가. 연 구 제 목:

나. 연 구 목 적:

다. 연 구 내 용:

라. 연구수행기간:

제2조 연구비는 원으로 하고 “을”이 전액 부담한다.

납 기 일	금 액

제3조 수탁연구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또는 그 실시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년을 경과할 때까지 “갑”은 “을” 또는 “을”이 지정한 자 외의 자에게 그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하지 못한다.

제4조 “을”은 제2조의 연구비 외에 “갑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“갑”에게 수탁연구에 필요한 자재 재료를 제공한다.

제5조 “을”은 “갑”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조자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파견할 수 있다.

제6조 “갑”과 “을”은 수탁연구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

제7조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8조 “을”은 수탁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 위와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“갑” 기 술 표 준 원 장
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

“을” 인